「진도 청년드림 만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2026. 11

전남개발공사
JEONNAM DEVELOPMENT CORP.

(전남주거복지센터)

목 차

■ 공고문 안내 1

1. 공급대상 3

2. 임대조건 4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6

4. 입주자격 8

5.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15

6. 신청서류 19

7. 입주자 선정방법 21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25

9. 기타 유의사항 26

10. 지구 및 단지여건 등 30

11.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36

12.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37

13. 갱신 임대조건 38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설정 및 자료출처 40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96

진도 청년드림 만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6.11.17]

진도 청년드림 만원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및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건설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131-26번지**

■ **공급대상 : 청년드림주택 60호**(청년 30호, 신혼부부 30호)

총건설호수	전용 59㎡(청년)	전용 84㎡(신혼부부)
60	30	30

-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1551-8424)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별 상황에 따라 상담 내용과 실제 자격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을 확인하지 않거나 잘못 신청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안 내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11.17.(화)**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동차,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https://www.jeonnam-gwangju.go.kr), 진도군청 누리집(https://www.jindo.go.kr) 및 전남개발공사 누리집(https://www.jnd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공고문 6~7쪽 참조)

신청접수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공개추첨	계약체결
'26.11.19(목)~29(일)	'26. 12.10(목)~'27. 1.10(일)	'27.1.23(토)(예정) (개별안내)	'27. 1월(예정) (개별안내)

※ **입주자격, 신청요건 및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공고문 8~14쪽 참조)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1.17.) 현재 공급신청자 및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소득·자동차 기준 및 입주자격 구분별 입주자격을 충족한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제외대상자 또는 **신청자 및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입주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동반입주자, 세대구성원

- **동반입주자** : 공급신청자와 함께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할 사람으로서 신청 시 등록한 자
- **세대구성원** : 신청자, 배우자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자와 동일 세대로 인정되는 직계비속**(실제 입주자)**

■ **임대조건** (공고문 4~5, 38~39쪽 참조)

① 진도 청년드림 만원주택 임대조건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통해 산정되며, 동일 공급형의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공급대상별 세부 신청자격, 임대조건 및 소득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주자격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근로·사업 등 소득활동을 유지(교육생, 취·창업 예정자 등 포함)

하며 별도로 정한 임대료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월 1만 원의 임대료를 적용합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 중에는 반기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거주 및 전입신고 유지, 임대료 및 관리비 2개월 이상 체납 여부를 점검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확인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임대료 감면 적용을 제외하고 **표준임대료**를 부과합니다.

③ 갱신계약 시에는 나이 및 신혼부부 요건을 제외한 입주자격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근로·사업 등 소득활동 유지 여부(교육생, 취·창업 예정자 등 포함) 등 임대료 감면 요건을 재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 기준에 따라 **표준임대료**에 **할증률이 적용**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④ 입주자격 변동에 따른 임대조건 및 계약

구분	발생상황	적용내용
최초 입주 후	입주자격 또는 임대료 감면요건이 변경·미 충족된 경우	사실확인 다음 달부터 월 1만원 감면 중단 → 감면 전 표준임대료 적용
갱신 계약 시	입주자격 또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차 갱신 : 감면 전 표준임대료의 150% 2차 갱신 : 재계약 거절 및 퇴거원칙
법정해지 사유 발생 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등 관계 법령상 계약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 퇴거 조치

※ 할증기준 : 39쪽 임대조건의 할증 참고

■ 임대기간

진도 청년드림 만원주택은 청년 **최대 거주기간(6년),** 신혼부부 **최대 거주기간(10년), 자립준비청년은 공고상 연장요건 충족시 최대 10년으로 제한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26쪽 참고)**

■ 입주자격 검증(공고문 8~14쪽 참조)

공급신청자 및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 전원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자동차 보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급신청자 및 동반입주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소득활동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및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회
- **(자동차소유)** 공고문에서 명기된 차명만 허용하며, **신청자 및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자동차등록원부(갑)를** 통해 조회
- **(소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 및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회**

입주민 보호 및 공동생활 안전관리

- **(금지행위)** 폭행·협박, 흉기 위협, 성범죄·스토킹, 주거침입 등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조치)** 객관적인 자료로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 및 임대차계약에 따라 재계약 거절 또는 계약 해제·해지 가능
- **(부정 입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가능
- **(처리절차)** 단순 민원이나 이웃 간 분쟁만으로 퇴거조치하지 않으며,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절차를 거쳐 조치

■ 기타사항

① 신청접수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합니다. 현장접수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급신청은 신청접수일 마감시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 입주 추첨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신청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동반입주자와 세대구성원은 모두** 무주택 여부 등 본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의 심사 대상**입니다. 입주 후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남개발공사로 14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신규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에 대해 **나이, 주택소유, 소득, 자동차 등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1. 공급대상

■ 공급형별 공급호수

공급형별	세대 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예정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부대시설	기계·전기실							
총계						60	32	28			
59	59.32	18.83	3.87	3.39	85.41	30	**16**	**14**	101 102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개별난방	**'27.3 (예정)**
84	84.76	25.83	5.52	4.85	120.96	30	**16**	**14**	101 102		

- 전체 공급 세대는 발코니 확장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공급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총 주차대수는 62대로 단지 내 지상주차 48대(장애인 3대 포함), 단지 외 부설주차장(남동리 131-78) 14대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2027년 3월**이며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격 구분별 배정호수 (상세 신청자격 설명은 모집공고문 8~14쪽 참조)

주택 신청은 반드시 공급형 및 입주자격 구분별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접수한 공급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저장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공급형별	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청년 (2인 이상) (*1)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2)		자립준비청년 (*3)	청년		(예비)신혼부부	
		관내 (*4)	관외 (*5)	관내	관외	-	관내	관외	관내	관외
총계	**60**	**13**	**2**	**14**	**2**	**1**	**13**	**1**	**13**	**1**
59㎡	30	13	**2**	-	-	1	**13**	1	-	-
84㎡	30	-	-	**14**	2	-	-	-	**13**	1

(*1) [청년(2인 이상)]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동반입주자가 2인 이상 청년 가구

(*2)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2024.11.17. 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6세 이하 **(2019.11.18. 이후 출생)**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3) [자립준비청년]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와 같이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

㉮ 공급신청자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자립준비지원 전담기관**(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이 추천한 사람

㉰ 공급신청자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공급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 공급지역의 청년드림주택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정착을 위하여 주거공동체 프로그램, 입주민 소통·교류, 생활환경 개선 등 관리·운영 관련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

※ 별도의 근로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격과 분리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 운영

(*4) [관내] 주택공급지역을 의미하며, 주택을 건설하는 **진도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5) [관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중 **제4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제외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관외 신청 가능지역>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5.** 전북특별자치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특별자치도

■ 기타사항

- **우선공급 신청자는 우선공급 공개추첨 중 탈락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공개추첨 당일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우선 및 일반공급 각각에 대하여 추첨번호를 부여합니다.
- 공무원, 공공기관, 정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 중 공급허용 대상자는 청년 및 신혼부부 유형별 공급물량의 10% 이내에서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대상호수는 **우선공급 신청 미달로 인한 잔여호수의 일반공급 전환**으로 증가 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조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입주세대 월평균소득의 비율에 따라 시세 대비 임대료율을 차등 적용(35~90%)하여, **동일 공급형 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세대 월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세전금액)을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년드림 주택은 별도로 정한 임대료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된 표준임대료에서 1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감면합니다.** 임대조건(표준임대료)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임대차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료 감면 적용 여부는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표준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금액)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이하)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기타 소득구간				
	~30%	~50%	~70%	~100%	~110%	~120%	~130%	~150%	~160%	~170%	~180%	~190%	~200%
1인	769,271	1,282,119	1,794,967	2,564,238	2,820,662	3,077,086	3,333,509	3,846,357	4,102,781	4,359,205	4,615,628	4,872,052	5,128,476
2인	1,259,788	2,099,646	2,939,504	4,199,292	4,619,221	5,039,150	5,459,080	6,298,938	6,718,867	7,138,796	7,558,726	7,978,655	8,398,584
3인	1,607,711	2,679,518	3,751,325	5,359,036	5,894,940	6,430,843	6,966,747	8,038,554	8,574,458	9,110,361	9,646,265	10,182,168	10,718,072
4인	1,948,421	3,247,369	4,546,317	6,494,738	7,144,212	7,793,686	8,443,159	9,742,107	10,391,581	11,041,055	11,690,528	12,340,002	12,989,476
5인	2,267,016	3,778,360	5,289,703	7,556,719	8,312,391	9,068,063	9,823,735	11,335,079	12,090,750	12,846,422	13,602,094	14,357,766	15,113,438
6인	2,566,786	4,277,976	5,989,166	8,555,952	9,411,547	10,267,142	11,122,738	12,833,928	13,689,523	14,545,118	15,400,714	16,256,309	17,111,904
7인	2,854,545	4,757,575	6,660,605	9,515,150	10,466,665	11,418,180	12,369,695	14,272,725	15,224,240	16,175,755	17,127,270	18,078,785	19,030,300
8인	3,142,304	5,237,174	7,332,044	10,474,348	11,521,783	12,569,218	13,616,652	15,711,522	16,758,957	17,806,392	18,853,826	19,901,261	20,948,696

- 8인을 초과하는 가구의 기준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합니다.
- (사례)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수가 3인 가구이면서 월평균소득이 5,000,000원인 경우에는 4구간 임대조건 적용

■ 공급형·소득구간별 임대조건

- **공급형·소득구간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1.17.) 현재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번이 도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정 당시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소득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으며, **입주 후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4.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 및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드림 만원주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여 입주자가 부담해야할 **임대료를 월 1만 원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 건축개발과-2199 (2026.11.10.)호]
  ※ 월 1만원 임대료는 12개월분 12만원을 지정된 계좌에 일괄 납부할 수 있으며, 확정 후 개별안내 합니다.

【근거 : 건축개발과-1884(2026.07.30.)호】

○ 청년드림 주택 월 임대료 감면 요건

① **입주자격 충족(갱신계약 시 나이 요건 및 신혼부부 여부 제외)**

② **(청년·신혼부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근로·사업 등 소득활동(※ 교육생, 취·창업 예정자 포함)**

③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④ **주거실태조사에 응하여 점검 사항을 충족한 사람**

○ **주거실태조사 시 점검 사항**

⑤ **신청인과 세대구성원, 동반입주자 모두 해당 임대주택에 실 거주 및 전입신고 유지**

⑥ **임대료와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하지 아니한 사람**

- 임대차기간 중 **반기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며, ①~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가 확인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임대료 감면 적용이 제외되어 **표준임대료를 부과**합니다. 단, **⑥ 관련 규정은 전체 계약기간 동안 상시 확인 및 적용합니다.**
- 갱신계약 시에는 ①~⑥ 요건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등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임대조건 조정 또는 재계약 기준을 정한 사항은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 **감면요건 미충족시 적용내용**

구분	발생 상황	적용내용
최초 입주 후	입주자격 또는 임대료 감면요건이 변경·미충족된 경우	사실확인 다음 달부터 월 1만원 감면 중단 → 감면 전 표준임대료 적용
갱신 계약 시	입주자격 또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차 갱신 : 감면 전 표준임대료의 150% 2차 갱신 : 재계약 거절 및 퇴거원칙
법정 해지사유 발생 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등 관계 법령상 계약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 퇴거 조치

※ 관련근거 : ①「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4035(2026.11.9.)호」③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4340(2025. 12. 31.)
②「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3 ④「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개발과-2199(2026.11.10.)호」

※ 갱신관련 세부내용 : 공고문 13.갱신임대조건 임대조건의 할증 참조(쪽 38~39)

- **구간별 임대조건 근거 : [건축개발과-8017(2026.04.01.)호]**

[단위 : 원]

구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예치금	월 표준임대료	
			청년59㎡	신혼부부84㎡
1구간	-	1,000,000	230,662	338,555
2구간	-	1,000,000	263,613	386,920
3구간	-	1,000,000	329,517	483,650
4구간	-	1,000,000	428,372	628,745
5구간	-	1,000,000	527,227	773,84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	1,000,000	593,130	870,570

(*)예치금 : 예치금 100만원은 퇴거 시 미납 임대료·관리비·공공요금 및 임차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원상복구비, 위약금 등의 정산을 위한 금액으로, 퇴거 및 정산완료 후 실제 정산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임대보증금은 별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공급일정 [공고 26.11.17.(화)]

신청접수 [우선공급,일반공급]	공개추첨 대상자 발표	입주대상자 선정(추첨)	계약체결
[인터넷 접수] **'26.11.19.(목) 09:00** **~** **11.29.(일)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인터넷 신청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7.1.10.(일)** (예정)	**[공개추첨]** '27.1.23(예정) (개별안내)	**[현장계약]** '27. 1월 예정 (개별안내)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시·군·공사 누리집	현장 : 진도군청 대회의실	현장 1. 진도 청년드림 만원주택 현장 (진도읍 남동리 131-26) 2.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 상담실

- 현장 신청접수는 실시하지 않으며, 접수기간 내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장소 : 1. 진도 청년드림 만원주택(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131-26)
  2.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 상담실 (주소 : 전남 무안군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빌딩 1층)
- 입주자격 검증조사가 지연될 경우 추첨대상자 발표, 입주대상자 선정 등 일정이 연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지사항은 전남개발공사 누리집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합니다. 로그인(간편인증) 후 정부24에서 **'진도 청년드림 만원주택'**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 원본·자필 작성본을 **스캔**하여 **첨부·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 접수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신청기간 및 서류보완 기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종류별로 각각 1개의 PDF 파일로 제출하되, 동일한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 유의사항

- **신청(보완)접수는 지정된 접수기간 동안에만 신청(보완)이 가능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신청(정부24)시 **'알림수신여부'** 란에 **수신으로 선택**해야 서류 보완·보정 요청 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알림수신'**을 선택하지 않아 보완·보정 요청 알림을 받지 못하거나, 접수기간**[2026.11.19.(목)~11.29.(일)]**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보완 방법 : 정부24 접속(PC만 가능) →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 보완보정 클릭**
- 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 입주 추첨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신청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서류 심사 등의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 입력에 따른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 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보완기간 마감 이후 취소·정정이 불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일정은 **자격심사 과정으로 인하여 변동 가능**하니, 이점 충분히 양지 바랍니다.
- 입주 시 공급신청자와 동반입주자는 해당 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이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증빙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기간 중 세대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남개발공사(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로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 : 전화 1551-8424

- **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입주 후 **14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동반입주자가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반입주자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비친족인 동반입주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전까지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은 해제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고,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급계약은 해제**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을 자격요건으로 인정받은 경우**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입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제할 수 있습니다. 출산·유산·입양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자격 영향은 관계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임신부부 출산 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 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에도 임신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당일 포함)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입주 전까지 제출)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주 전에 출산 또는 유산 등으로 임신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취·창업 예정자는 입주 전까지 소득 활동에 대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급계약은 해제됩니다.**

4.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1.17.) 현재 **①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0.11.18.~2008.11.17) **공급신청자로서, 공급신청자와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고 ②공고에서 정한 자동차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며,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서 근로·사업 등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교육생, 취·창업 예정자 등 별도 인정하는 활동요건에 해당하고, ④공급제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⑤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신청자 및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 **'자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인 자녀'와 '태아'를 의미**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

무주택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무주택자 기준

-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 또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 청년 기준은 제외**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하며, **공급신청자 및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유형별 무주택자 기준은 「5.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반입주자'란** 공급신청자와 함께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려는 사람으로 **형제·자매·사촌·조카와 룸메이트, 직장동료 등 가족 관계가 아니더라도 거주 등 생활을 공유하거나 공유할 예정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
- **'세대구성원'이란** 혈연(자녀), 결혼, 입양 등으로 **가족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로,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된 경우를 뜻합니다.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
- 입주 후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남개발공사로 14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신규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에 대해 **나이, 주택소유, 소득, 자동차 등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나이, 주택소유, 소득, 자동차)의 대상**이 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청년 및 예비신혼부부의 공급신청자 및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를 검증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 외국인 **배우자** 직계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신청자는 공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공급신청자 및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소유가 확인되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주택소유여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급신청자 및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주택소유 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현재 무주택자이더라도 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2024.11.18.~2026.11.17.) 공급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상속으로 주택의 지분(전체 또는 공유)을 소유한 경우 공고일 현재 해당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예외(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참조)로 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 상의 처리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 그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②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③ (분양권 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자산보유기준 및 검증방법

■ 자산보유기준

- 청년드림 주택은 자산보유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공고문에 명시된 허용 차명 외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 **공급신청자 및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 모두 해당되며, 대상자 전원이 보유·사용하고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갑)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허용 차명 [근거: 건축개발과-11290(2026.05.12.)호]

구분	허용 차명
자동차	• 영업용 자동차(택시·버스·영업용 화물차 등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신청자·동반입주자·세대구성원 등 청년드림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3대 미만 허용하며, 모두 다음에 명시된 허용 차종만을 소유할 것 • 대기환경 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현대 : i30, i40, 그랜저(3,000cc 미만), 넥쏘, 베뉴, 베르나, 벨로스터, 벨로스터N, 산타페, 쏘나타, 아반떼, 아반떼N, 아이오닉, 아이오닉5(N line 제외), 아이오닉6(N line 제외), 엑센트, 캐스퍼, 캐스퍼 일렉트릭, 코나, 코나 EV, 투싼 - 기아 : K3, K5, K7(3,000cc 미만), K8(3,000cc 미만), EV3, EV3 GT, EV4, EV4 GT, EV5(GT 제외), EV6(GT 제외), PV5, 니로, 니로 EV, 레이, 레이 EV, 로체, 모닝, 셀토스, 스토닉, 스포티지, 쏘렌토, 쏘울, 쏘울 EV, 카렌스, 포르테, 프라이드 - 한국지엠 : 라세티, 마티즈, 말리부, 볼트 EV, 볼트 EUV, 볼트, 스파크, 아베오, 올란도, 윈스톰, 이쿼녹스, 젠트라, 캡티바, 크루즈, 토스카,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 - 르노코리아 : QM3, QM5, QM6, SM3, SM3 Z.E., XM3, 아르카나, SM5, SM6, SM7(3,000cc 미만), 그랑 콜레오스, 세닉 E-Tech, 조에, 캡처, 클리오, 트위지, 필랑트 - 케이지모빌리티 : 무쏘, 무쏘 EV, 액티언, 액티언 스포츠, 카이런, 코란도, 코란도 스포츠, 코란도 투리스모, 코란도 이모션/EV, 토레스, 토레스 EVX, 티볼리 - 국내 전기자동차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 전기자동차 예) 영광 CEVO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고된 신규 차종은 최초 출고 당시 차량가격(옵션 포함,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 제외)이 60백만원 이하인 차량에 한합니다. 해당 차종을 중고차로 구입한 경우에도 최초 출고 당시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 경우 신청자는 해당 차량의 최초 출고 당시 차량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리스·장기렌트 등 소유권과 관계없이 신청자,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이 계약하여 전용·상시 사용하는 차량과 법인·사업자 명의 차량 중 개인에게 전용 배정되어 상시 사용하는 차량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동차 최초 출고가격 확인서류

• 자동차의 최초 출고 당시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자동차 구매계약서(차량 기본가격 및 선택 옵션 금액 포함)

② 자동차 판매대금 명세서 또는 출고 정산서

③ 자동차 제조사 또는 공식 판매사가 발급한 차량가격 확인자료

④ 그 밖에 최초 출고 당시 차량가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서류에는 차종, 연식, 세부 사양, 선택 옵션 및 최초 출고 당시 차량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차량가격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및 산정방법

■ 소득기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자 또는 근로자로서 소득이 있는 사람(「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 다만 일용직 및 연소득 600만원 미만 사업소득자는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 소득금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으로, 신청자 세대의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아래의 기준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소득기준금액은 「**5.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의 소득은 신청자 본인만을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다만, 입주 시 신청자와 함께 세대를 구성할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반입주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소득금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소득정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금액**)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이하)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기타 소득구간				
	~30%	~50%	~70%	~100%	~110%	~120%	~130%	~150%	~160%	~170%	~180%	~190%	~200%
1인	769,271	1,282,119	1,794,967	2,564,238	2,820,662	3,077,086	3,333,509	3,846,357	4,102,781	4,359,205	4,615,628	4,872,052	5,128,476
2인	1,259,788	2,099,646	2,939,504	4,199,292	4,619,221	5,039,150	5,459,080	6,298,938	6,718,867	7,138,796	7,558,726	7,978,655	8,398,584
3인	1,607,711	2,679,518	3,751,325	5,359,036	5,894,940	6,430,843	6,966,747	8,038,554	8,574,458	9,110,361	9,646,265	10,182,168	10,718,072
4인	1,948,421	3,247,369	4,546,317	6,494,738	7,144,212	7,793,686	8,443,159	9,742,107	10,391,581	11,041,055	11,690,528	12,340,002	12,989,476
5인	2,267,016	3,778,360	5,289,703	7,556,719	8,312,391	9,068,063	9,823,735	11,335,079	12,090,750	12,846,422	13,602,094	14,357,766	15,113,438
6인	2,566,786	4,277,976	5,989,166	8,555,952	9,411,547	10,267,142	11,122,738	12,833,928	13,689,523	14,545,118	15,400,714	16,256,309	17,111,904
7인	2,854,545	4,757,575	6,660,605	9,515,150	10,466,665	11,418,180	12,369,695	14,272,725	15,224,240	16,175,755	17,127,270	18,078,785	19,030,300
8인	3,142,304	5,237,174	7,332,044	10,474,348	11,521,783	12,569,218	13,616,652	15,711,522	16,758,957	17,806,392	18,853,826	19,901,261	20,948,696

■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며, 소득항목에 대한 설명 및 자료는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방법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1세대는 **일반공급·우선공급 등 공급유형과 관계없이 1주택만 신청·공급받을 수 있으며**, 동일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해당 세대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청년 세대원에 대한 예외
  세대주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동일 세대 내 청년 자격을 갖춘 세대원이 2명 이상이면 각 세대원은 청년 자격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고에서 정한 **'청년 2명 이상 거주' 우선공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선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신청한 경우
  세대주가 일반공급 또는 우선공급에 신청한 경우에는 위 청년 세대원에 대한 중복신청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주와 동일 세대의 청년 세대원이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공급유형과 관계없이 해당 세대의 신청을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세대주가 청년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세대주인 경우에는 청년 세대원에 대한 중복신청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근거지 및 소득 활동 기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소득근거지인 사람,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해 공급지역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중인 교육생, 예술인, 취·창업 예정인 사람에게 입주자격이 부여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자 또는 근로자로서 소득이 있는 사람(「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 **농업인 또는 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 종사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 **※ 귀농어업인, 귀촌인 : 전입신고, 소득 증빙필수**
  -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진도군수가 인정하는 교육기관(교육기간이 30일 이상인 교육으로 교육기관명으로 한정한다)에서 교육 중인 교육생

교육 기관
진도군농업기술센터, 진도군산림조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도사무소, 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 및 지역농협,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 한국수산업경영인 진도군연합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진도지원,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

  - 청년드림 주택 **입주 전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로 예정이거나 창업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
  - 「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의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
- '소득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 예정이거나 창업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소득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당자),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급계약은 해제됩니다.
- 신청자별 소득 활동 등을 증빙하기 위한 제출 서류는 「**6. 제출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급 제외대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청년드림 주택 공급이 제한됩니다.

㉮ 관외 자격으로 공급신청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자립준비청년 또는 예술인"은 공급대상에 포함.

㉯ 현역 직업군인(입주가능일 기준 전역예정자는 제외한다)

㉰ 「공무원 등」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급대상에 포함하되, 청년 및 신혼부부 유형별 공급물량의 10% 이내에서 공급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시설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2) 본사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 기관에 근무하면서, **공고일 기준 최초 임용일로부터 청년 유형 4년 이내(2022. 11. 18. 이후) 신혼부부 유형 7년 이내인 사람(2019. 11. 18. 이후)**(이하 **"저연차"**라고 한다).

3) 진도군수가 인정(공고일 당시 함께 공고된 기관으로 한정한다)하는 아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진도군수 인정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한국전력공사 진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진도수도관리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해남진도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진도지원, 국립남도국악원, 진도공공도서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도사무소, 우정사업본부 진도우체국,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진도지역,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 진도출장소, 국민연금공단 해남진도지사

4) 본사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아닌 업체 중 진도군수가 공고일 당시 함께 공고한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 경우라도 위 3)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체로 한정한다)

관련 업체
해당 없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청년드림 주택에 거주한 적이 있는 사람.

㉳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직전 2년 이내(2024.11.18.~2026.11.17.) 거주했던 사람. 다만, 자립준비청년은 공급대상에 포함

• 공급 제외대상자 중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보험업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사람
2.「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통계법」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물류정책기본법」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5.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 일반공급, 우선공급의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상에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무주택자이며 소득·자동차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의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공급 자립준비청년은 지역제한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입주자격 구분별 상세 신청자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 세부 신청자격

청년

【유의사항】 주택소유, 소득 및 자동차는 신청자 및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1.17.) 현재 공급신청자 및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 전원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1)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0.11.18.~2008.11.17)

(2) 공급신청자 및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또한, **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2024. 11. 18. ~ 2026. 11. 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단,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지분(전체 또는 일부)은 공고일 현재 모두 처분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자 또는 근로자로서 소득이 있는 사람(「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다만, 일용직 및 연소득 600만원 미만 사업소득자는 제외한다.)

㉯ **농업인 또는 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 종사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 ※ 귀농어업인, 귀촌인 : 전입신고, 소득 증빙필수**

㉰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진도군수가 인정하는 교육기관(교육기간이 30일 이상인 교육으로 교육기관명으로 한정한다)에서 교육 중인 교육생

교육 기관
진도군농업기술센터, 진도군산림조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도사무소, 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 및 지역농협,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 한국수산업경영인 진도군연합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진도지원,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로 예정이거나 창업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입주 전**까지 취업 또는 창업 후 입주 시 증빙 서류 제출)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일 것**

구분	기준 중위소득	월 소득기준금액	비고
1인	170% 이하	4,359,205 원 이하	
2인	160% 이하	6,718,867 원 이하	
3인	150% 이하	8,038,554 원 이하	

(5)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 진도군으로 되어 있거나(관외 신청자 제외) 청년드림주택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날까지 전입신고가 가능한 사람

❷ 신혼부부

【유의사항】 주택소유, 소득 및 자동차는 신청자 및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1.17.) 현재 공급신청자 및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 전원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1)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0.11.18.~2008.11.17)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혼인신고일 2019. 11. 18 이후)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2019.11.18. 이후 출생, 태아 포함)**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일 것, 또한, 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2024. 11. 18. ~ 2026. 11. 17.)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단,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지분(전체 또는 일부)은 공고일 현재 모두 처분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4) 공급신청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자 또는 근로자로서 소득이 있는 사람(「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다만, 일용직 및 연소득 600만원 미만 사업소득자는 제외한다.)

㉯ **농업인 또는 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 종사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 ※ 귀농어업인, 귀촌인 : 전입신고, 소득 증빙필수**

㉰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진도군수가 인정하는 교육기관(교육기간이 30일 이상인 교육으로 교육기관명으로 한정한다)에서 교육 중인 교육생

교육 기관
진도군농업기술센터, 진도군산림조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도사무소, 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 및 지역농협,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 한국수산업경영인 진도군연합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진도지원,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로 예정이거나 창업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입주 전**까지 취업 또는 창업 후 입주 시 증빙 서류 제출)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를 말한다)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한다.)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8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0퍼센트) 이하일 것

구분	기준 중위소득	월 소득기준금액	비고
2인 외벌이	160% 이하	6,718,867원 이하	
2인 맞벌이	190% 이하	7,978,655원 이하	
3인 외벌이	150% 이하	8,038,554원 이하	
3인 맞벌이	180% 이하	9,646,265원 이하	

(6)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 진도군으로 되어 있거나(관외 신청자 제외) 청년드림주택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날까지 전입신고가 가능한 사람

(7)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고일 현재 진도군이 아닌 경우 청년드림 주택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날까지 전입신고가 가능한 사람(동일세대 전입신고)

우선공급

■ 세부 신청자격

【유의사항】 주택소유, 소득 및 자동차는 신청자 및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1.17.) 현재 공급신청자 및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 전원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청년(우선공급)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청년 일반공급 신청자격(15쪽) 1)부터 5)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 공급신청자를 포함하여 동일 세대원 수가 2인 이상의 거주가 가능한 사람

(동거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성년인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신청자와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함)

(3)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일 것**

구분	기준 중위소득	월 소득기준금액	비고
1인	170% 이하	4,359,205 원 이하	
2인	160% 이하	6,718,867 원 이하	
3인	150% 이하	8,038,554 원 이하	

신혼부부(우선공급)

(1) 신혼부부 일반공급 신청자격(16쪽) 1)부터 7)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2세 미만(2024.11.17. 이후 출생)(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사람

㉯ 6세 이하(2019.11.18. 이후 출생)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를 말한다)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한다.)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8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0퍼센트**) 이하일 것

구분	기준 중위소득	월 소득기준금액	비고
2인 외벌이	160% 이하	6,718,867원 이하	
2인 맞벌이	190% 이하	7,978,655원 이하	
3인 외벌이	150% 이하	8,038,554원 이하	
3인 맞벌이	180% 이하	9,646,265원 이하	

❸ 자립준비청년(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1.17.) 현재 공급신청자 및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 전원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1)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0.11.18.~2008.11.17)

(2) 공급신청자 및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또한, 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2024. 11. 18. ~ 2026. 11. 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단,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지분(전체 또는 일부)은 공고일 현재 모두 처분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자 또는 근로자로서 소득이 있는 사람(「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다만, 일용직 및 연소득 600만원 미만 사업소득자는 제외한다.)

㉯ **농업인 또는 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 종사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 ※ 귀농어업인, 귀촌인 : 전입신고, 소득 증빙필수**

㉰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진도군수가 인정하는 교육기관(교육기간이 30일 이상인 교육으로 교육기관명으로 한정한다)에서 교육 중인 교육생

교육 기관
진도군농업기술센터, 진도군산림조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도사무소, 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 및 지역농협,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 한국수산업경영인 진도군연합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진도지원,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로 예정이거나 창업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입주 전**까지 취업 또는 창업 후 입주 시 증빙 서류 제출)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170%,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일 것

구분	기준 중위소득	월 소득기준금액	비고
1인	170% 이하	4,359,205 원 이하	
2인	160% 이하	6,718,867 원 이하	
3인	150% 이하	8,038,554 원 이하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급신청자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2016.11.17. 이후 퇴소)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자립준비지원 전담기관(**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이 추천한 사람

㉯ 공급신청자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20.11.17. 이후 퇴소)으로서 진도군수가 추천한 사람

(6)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 진도군으로 되어 있거나 청년드림주택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날까지 전입신고가 가능한 사람

(7) 공급지역의 청년드림주택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정착을 위하여 주거공동체 프로그램, 입주민 소통·교류, 생활환경 개선 등 관리·운영 관련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

※ 별도의 근로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격과 분리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 운영

6.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1.1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구원 또는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세대구성원 외 동반입주자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반입주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격자로 확인되더라도,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공개추첨 결과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위·변조 등으로 거짓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공통 제출서류

[별첨 양식 : 공고 게시물 첨부파일 참조]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부수
입주 신청서 **[별첨 1]**	· 내용 확인 후, 신청자가 자필서명하여 제출 **※ 입주신청서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거부됩니다.**	· 모집공고 첨부서식 (전남개발공사)	1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2]**	소득검증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날인 · 입주자격 전산검증 동의 ※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서명 ※ 미제출 시 신청·접수 제한 가능	· 모집공고 첨부서식 (전남개발공사)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첨 3]**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별첨 4]**	· 내용 확인 후, 신청자가 자필 서명하여 제출 **※ 확인서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거부됩니다.**	· 모집공고 첨부서식 (전남개발공사)	1통
주민등록표 등본	※ 세대주 관계·세대원 정보 포함 발급 ※ 분리세대 배우자 등본 추가 ※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정부24 · 읍·면·동 주민센터	1통
주민등록표 초본	해당자> 거주기간·주소이력 또는 세대주 변동 확인 시 ※ 과거 주소변동 및 세대주 관계 포함 발급	· 정부24 · 읍·면·동 주민센터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자 기준 상세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각각 제출 ※ 외국인 배우자는 관련 증명서 추가	· 정부24 · 읍·면·동 주민센터	1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검증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제출 ※ 직장·지역·피부양자 포함 전체 이력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부24	1통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자 제출['25. 11~'26. 10](최근 12개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부24	1통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 신청자 제출, 근로자용 전체 이력 발급 ※ 미가입자는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등 대체	· 정부24	1통
근로, 사업소득 증명	·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해당직장 · 정부 24 등	각1통
무주택 확인서	· 청약홈 주택소유확인 '**무주택확인서**' 발급 **※ (예비)신혼부부나 세대원이 있는 경우 각각 제출**	청약홈	1통
주택 관련 소명서류	<해당자> 주택소유 조회결과 소명 필요 시 ※ 무주택 예외 등 입증서류 제출	· 등기소·인터넷등기소 · 정부24·관할 지자체 등 (소명 사유별 상이)	해당자
자동차 소유 및 사용관련 서류 (10쪽 자동차 출고가격 확인서류 참고)	· 자동차등록원부(갑): 보유·사용차량 전체 · 리스·렌트 등: 차량사용 계약서 · 법인·사업자차: 차량배정·사용 확인서 · 신규차량: 최초 출고가격 증빙서류	· 정부24 · 자동차등록사업소 등 (소명 사유별 상이)	해당자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현재 근로 여부 및 실제 근무지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직장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 영위 여부 및 사업장 소재지 확인	· 국세청 · 세무서 · 홈택스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사업자로서 신청자의 대표자·임원 등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 · 등기소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확인	· 행정복지센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6세 이하 자녀	·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권장) ※ 신청자와 자녀의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 행정복지센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입양 자녀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태아	· 임신진단서 ※ 태아를 자녀 또는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우선공급] 청년 **[별첨 5], [별첨 6]**	① 우선공급 청년 신청 확인서 **[별첨 5]** ② 우선공급 청년 세대구성 확인서 **[별첨 6]**	· 공사 제공 양식
예비신혼부부 **[별첨 7], [별첨 8]**	①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별첨 7]** ②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별첨 8]**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예비배우자 각 1통 ④ 예비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⑤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 공사 제공 양식 · 행정복지센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배우자와 실제 혼인한 사실 및 혼인 후 세대구성 확인	· 행정복지센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외국인 배우자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대체 ※ 필요 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추가	· 행정복지센터 · 출입국·외국인청 · 정부24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지·농작물 등 농업 관련 경영정보가 확인되어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정부24
축산업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가축 사육 등 축산 관련 경영정보가 확인되어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정부24
임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업정보 포함) ※ 임야·임산물 생산 등 임업 관련 등록내용 확인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정부24
어업인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 어업 관련 경영정보가 확인되어야 함	· 지방해양수산청 · 정부24
농·축산·임업인 해당자만	· 농업인 확인서 등 ※ 경영체 등록확인서만으로 자격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완 제출 · 농·축산·임업인 교육생 : 공고일 현재 교육사실 확인서(교육기간 30일 이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 · 공고문 열거 교육기관
[우선공급]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별첨 9]**	① 보호종료확인서 ② 공사 지정 추천서 **[별첨 9]** ※ 보호종료확인서로 보호종료 사실·보호종료일을 확인하여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여부 판단 ※ 공사 지정 추천서는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의 추천 여부 확인	① 정부24 / 행정복지센터 / 보호기관 등 ②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
[우선공급]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별첨 10]**	①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확인서 ② 진도군수 추천서 [공사 지정서식] **[별첨 10]** ※ 입퇴소확인서로 퇴소 사실·퇴소일을 확인하여 공고일 기준 6년 이내 여부 판단	① 해당 청소년복지시설 / 시·군·구 등 ② 진도군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유효 여부 확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취·창업예정자 **[별첨 11]**	입주 전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취업·창업 사실 및 근무지·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별첨 11]**	· 공사 제공 양식
위임장 **[별첨 12]**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계약하기 어려워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제출**[별첨 12]**	· 공사 제공 양식

※ 별첨 양식은 공고 게시물의 첨부파일 참조

7. 입주자 선정방법

① 우선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우선 선정 후, ②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를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여 일반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며, ③ 일정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는 입주자격 구분, 공급유형 및 관내·관외 구분별 공급호수 범위에서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선정**합니다.
- 신청서류 심사, 주택소유·소득·자동차 등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적격자로 확인된 신청자**를 공개추첨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창업 예정자와 근로 예정자**는 근로·창업 예정 요건을 제외한 다른 입주자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조건부 적격자**로 인정하여 공개추첨 대상에 포함하며, 공개추첨으로 선정되고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최종 입주자로 확정합니다.
- **창업 예정자와 근로 예정자 자격확인**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거나 창업할 예정인 사람」은 신청서의 해당 항목에 표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예정자 또는 창업예정자로 표시한 신청자는 다른 입주자격을 충족한 경우 **조건부 적격자**로 인정하여 공개추첨 대상에 포함합니다.
③ 해당 신청자는 신청 당시 근로 또는 창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청서의 해당 항목에 표시한 것은 정해진 기한까지 근로 또는 창업 요건을 이행하겠다는 확약으로 봅니다.
④ 당첨된 **근로 예정자** 및 **창업 예정자**는 다음 자료를 **입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 예정자**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회보험 가입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자에 한함) (근무 사실과 근무지 확인 가능 자료)
- **창업 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허가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창업 사실과 사업장 소재확인 자료)

⑤ 근로 예정자는 실제 근무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어야 하며, 창업예정자는 신청자 본인이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로 등록되고 사업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
⑥ 입주 전**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근로 또는 창업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합니다.**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당첨이 취소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 됩니다.

■ 유형별 공급물량

(단위 : 호)

구분	합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관내	관외	자립준비청년	관내	관외
청년	30	13	2	1 (*)	13	1
신혼부부	30	14	2	-	13	1

- (*)「**자립준비청년**」 공급물량 1호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청년 일반공급 관내 물량으로 전환**합니다.

※ 최종 공급물량은 신청접수 및 자격검증 결과, 우선공급 미달물량의 일반공급 전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선공급

- 우선공급 입주자격 구분별 배정호수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 우선공급은 다음의 입주자격 구분과 관내·관외 공급호수 범위에서 각각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자립준비청년 우선공급
② 청년 우선공급 관내
③ 청년 우선공급 관외
④ 신혼부부 우선공급 관내
⑤ 신혼부부 우선공급 관외

- 동일한 입주자격 구분 및 지역 구분에서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공급 **신청자가 해당 공급호수 이하인 경우**에는 입주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우선공급**은 다음에 따라 선정합니다.

① **경쟁자가 있는 경우** : 적격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
② **경쟁자가 없는 경우** : 자립준비 청년은 지방자치단체 자립준비지원 전담기관(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이 추천하거나 진도군수가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 가능
③ **적격자가 없거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 해당 공급호수는 **청년 일반공급 관내 물량으로 전환**

- **우선공급에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동일 공급유형**의 일반공급 추첨대상에 포함**합니다.
  ※ **(예시)** :「청년」우선공급 관내 미선정자→「청년」일반공급 관내 추첨대상에 포함
- **우선공급 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하는 경우** 남은 물량은 **동일 공급유형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합니다.
  - 우선공급 관외 미달 물량 → 일반공급 관외
  - 우선공급 관내 미달 물량 → 일반공급 관내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입주자격 구분별 배정호수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은 다음의 입주자격 구분과 관내·관외 공급호수 범위에서 각각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청년 일반공급 관내
② 청년 일반공급 관외
③ 신혼부부 일반공급 관내
④ 신혼부부 일반공급 관외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공급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하며, 미 신청, 미 계약에 따른 잔여 동·호가 발생하여도 추첨을 통해 정해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동일 공급유형의 우선공급 관외 물량 또는 일반공급 관외 물량에 미달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 관내 물량으로 전환하여 관내 신청자 중에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전환 후에도 미달 물량이 발생한 경우 남은 물량은 다른 공급유형으로 **재배정하지 않고**, **해당 모집군으로 추가모집을 실시**합니다.
  ※ **(예시)** : 신혼부부 일반공급 관내 물량 13호 중 적격자가 10명인 경우 10호만 공급하고, **남은 3호는 신혼부부 유형으로 추가 모집**

■ 「공무원 등」 중 공급 대상 포함자 추첨

• **「공무원 등」에 포함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시설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2) 본사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 기관에 근무하면서, 공고일 기준 **최초 임용일로부터 청년 유형 4년 이내, 신혼부부 유형 7년 이내인 사람**(이하 **"저연차"**라고 한다).
3) 진도군수가 인정(공고일 당시 함께 공고된 기관으로 한정한다)하는 공공기관, 정부의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진도군수 인정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한국전력공사 진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진도수도관리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해남진도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진도지원, 국립남도국악원, 진도공공도서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도사무소, 우정사업본부 진도우체국,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진도지역,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 진도출장소, 국민연금공단 해남진도지사

• 추첨 **호수는 공고문에 따라** 유형별 청년, 신혼부부 공급비율의 각각 10% 이내입니다.

• **「공무원 등」의 유형별 공급 호수 : 청년 2호, 신혼부부 2호**

• 「공무원 등」의 입주자 선정방법

① 「공무원 등」 공급허용 대상자는 일반 신청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공무원 등」 공급허용 대상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유형별 공급물량의 10% 이내 범위에서 청년 유형 2호, 신혼부부 유형 2호로 제한**합니다.
※ 공급 상한은 우선공급·일반공급 및 관내·관외 선정자를 유형별로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추첨 진행 중 해당유형 **「공무원 등」의 공급 호수가 확정되는 즉시** 추첨 대기 중인 「공무원 등」의 신청자는 다른 추첨에 참가하지 않고 즉시 **예비입주자 추첨으로 전환**합니다. 예비입주자 추첨에 참가하지 않고 **입주자 추첨에 계속 참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입주자로도 선정하지 않습니다.**

③ 「공무원 등」 중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공무원 등」 중에서 당첨된 자가 계약 포기, 자격 부적격 또는 입주 포기등으로 제외된 경우 「공무원 등」 중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예비순번에 따라 추가로 선정합니다.

■ **추첨방법**

<추첨 진행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도착/대기	**본인확인 및 등록**	**추첨순서 손목밴드 추첨**	**추첨안내**	**추첨**	**당첨자 확인 및 동호수 추첨**	**폐회 및 퇴장 (정리)**
도착순서에 따라 대기	본인확인 (대리인) 및 등록	손목밴드와 동일한 번호 좌석 착석	추첨진행 안내 및 추첨볼 투입	**청년** (자립, 우선, 일반) **신혼부부** (우선, 일반, 예비입주자)	**당첨자 동호수 추첨, 예비 입주자 확인**	추첨종료 및 퇴장

① **(도착/대기)** 도착 순서에 따라 정해진 구역에서 입장시간 전까지 대기(안내문, 음료제공)
- 행사장 보안유지 및 혼잡 방지를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

② **(본인확인 및 등록)** 공개추첨 대상자 본인 확인 및 확인 완료된 대상자에 한해 추첨 참여 자격부여
- 본인 참석 시 신분증 확인,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등 관련 서류 확인
- **추첨 시작 전까지 참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참으로 처리**

③ **(추첨순서 손목밴드 추첨)** 추첨순서를 정하는 손목밴드 추첨(우선공급 대상자는 두 가지 밴드 수령)
- 본인 확인이 완료된 대상자가 직접 추첨하여 추첨순서가 표시된 손목밴드 수령 및 착용
- 손목밴드와 동일한 좌석에 착석
- **등록 시 추첨한 일반공급 추첨순서는 당첨자를 제외한 예비 입주자 추첨순서와 동일합니다.**

④ **(추첨안내)** 추첨진행 안내 및 추첨 볼 투입
- 입회자(관계기관) 확인 및 공급유형별 추첨대상자 수, 공급호수 및 예비 입주자 선정 여부 설명

⑤ **(당첨자 확인)**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확인(인적사항, 신청유형, 서명, 계약 등 유의사항 안내)

⑥ **(폐회 및 퇴장)** 추첨종료 후 사회자의 행사 종료 안내, 안내 요원의 유도에 따라 퇴장

⑦ **(추첨순서)** 추첨은 아래 표 순서로 진행

청년				신혼부부			
순서	**유형**	**공급구분**	**공급**	**순서**	**유형**	**공급구분**	공급
1	청년	자립준비청년	1호	7	신혼우선	우선 관외	2호
2	청년우선	우선 관외	2호	8		우선 관내	14호
3		우선 관내	13호	9	신혼일반	일반 관외	1호
4	청년일반	일반 관외	1호	10		일반 관내	13호
5		일반 관내	13호	11	예비(신혼)	예비입주자	**30명**
6	예비(청년)	예비입주자	**30명**				
		청년 계	**30호**			**신혼 계**	**30호**
		총계	**60호**				

※ 추첨 대상자가 지정된 추첨에 불참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탈락)됩니다.

※ 추첨순서와 방법은 유형별 추첨자 수 또는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입주 동·호수는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당첨자가 임의로 동·호수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예비입주자는 **신규 공급주택 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드림 주택은 공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공급주택 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인원 : **60명(공급호수의 100%) / (**청년 : **30명,** 신혼부부 : **30명)**
- **예비입주자의 자격**은 당첨자의 계약 포기, 자격 미달 또는 계약 해지 등에 따라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입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당첨자 발표 【추첨 당일 현장】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층별·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추첨당일 확정하고 개인사정으로**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 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다른 지역의 청년드림 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예비입주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합니다.

계약안내

■ 현장계약【계약기간 : 개별안내】

- **당첨자는 지정계좌에 예치금 입금 후 다음의 계약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 계약기간	개별안내	
• 계약장소	1. 진도 청년드림 만원주택(진도읍 남동리 131-26) 2.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빌딩 1층)	
• 계약방법	방문계약	
• 문의처	1551-8424 / 061-282-8424	

- 「**입금확인**」**은 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예치금** 입금 후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SMS는 신청접수 시 "SMS 수신동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공통서류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 예치금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9. 기타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접수]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원칙에 따라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신청자 및 배우자(예비배우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해당)가 동시신청 하는 경우 중복 신청에 해당]

- **[제출서류]** 다른 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원본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이 : 원본스캔, 전자문서 : 파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는 자필 작성·서명한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 발급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1.17.)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①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서류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계약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제 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배우자는 반드시 신청 당시 제출한 예비배우자이어야 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등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급 계약 해제
  ③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 공급 계약 해제
  ※ 계약 해제 여부 및 예치금 공제 여부는 28쪽의 귀책사유·공제기준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 **[자격검증 부적격자 소명절차]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기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전남개발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첨제외 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제출하신 소명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8.12.11)에 따라 **분양권등(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당첨자 발표일 이전에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후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예치금 반환 및 공제 여부는 28쪽의 귀책사유·공제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 **[유형별 거주기간]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관계 법령과 공고문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2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과 최초 갱신계약을 포함한 **기본 거주기간은 4년(2년+2년)**이며, 이후에는 입주자 유형별 연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래의 최대 거주기간 범위에서 추가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초 거주기간	연장 요건 및 기간	최대 거주기간
청년	4년(2+2)	청년 입주자격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6년
신혼부부	4년(2+2)	입주일 이후 자녀 출생 시 1자녀당 3년 연장 가능 ※ 최대 2자녀까지 인정	10년
자립준비청년	4년(2+2)	입주자격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다만, 대체 가능한 자립준비청년이 없는 경우 최대 거주기간 10년의 범위에서 2년 단위 추가 연장 가능	10년

※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자격 변경시 2명 모두 기준에 부합 할 경우 신혼부부로 계약을 변경하고 현 거주지에서 거주하며, 거주지 변경 여부는 별도 검토하여 결정한다.

- **[갱신계약] 갱신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고, 갱신계약 조건 및 공고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 발생 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의 해석에 따릅니다.**
  - 갱신계약 시에는 **무주택요건, 실거주 여부, 주민등록 전입 유지 여부, 임대료 납부 여부 등 관계 법령과 이 공고에서 정한 갱신요건을 확인**합니다. 다만, 최초 입주 시 적용한 **연령 및 신혼부부 해당 여부는 이 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갱신계약 시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또는 갱신횟수가 남아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조건
① 입주자격 충족(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갱신계약 시 나이 요건 및 신혼부부 여부 제외)
② (청년·신혼부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근로·사업 등 소득활동
③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④ **주거실태조사에 응하여 점검 사항을 충족한 사람**
⑤ 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구원 또는 세대구성원 모두 해당 임대주택에 실거주 및 전입신고 유지
⑥ 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하지 아니한 사람

- **[무주택]**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2026.11.17.) 입주 후 퇴거 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됩니다.
- **[차량등록]**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의 타인소유 차량은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전입신고] 임차인**과 함께 입주하는 **세대구성원과 동반입주자는 입주 후 14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전**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당첨이 취소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 됩니다.**
- **[임대료 감면 제외 대상]** 임대차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달의 다음 달부터 월 1만원의 임대료 감면 적용을 중단**하고 **표준임대료를 부과**합니다.
  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감면중단→관계 법령 및 임대차계약에 따라 재계약 거절 가능]
  ②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감면중단→관계 법령 및 임대차계약에 따라 재계약 거절 가능]
  ③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감면중단→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시 계약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가능]
  ④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감면중단→체납관리 및 임대차 계약서, 관계기준에 따라 조치]
  - **청년 우선공급 유형은 동반입주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입주 후 퇴거한 경우 임대료 감면적용을 중단하고 갱신계약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단, 신규 동반입주자로 변경 신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입주 후 동반입주자 또는 세대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자는 이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가 갱신계약 시 임대료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갱신계약에 한하여 기존 표준임대료의 150%를 적용**하며,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위 사유에 따른 **임대료 감면 중단은 재계약 거절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감면요건 미충족 사유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약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 임대료 **2개월분 이상 체납은 월 1만원 감면 중단사유**이며,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재계약 거절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중 임대료 감면중단 사유가 해소되고, 이 공고에서 정한 임대료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달의 다음 달부터 월 1만원의 임대료 감면을 다시 적용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되었거나 재계약이 거절되어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계약 거절 및 퇴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입주자 유형별 최대 거주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주택 인도일까지 해당 주택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된 후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배상금 또는 손해금을 산정하며, 같은 손해를 중복 산정하지 않습니다.

- **[예치금 납부 및 반환]**

① 전액반환
- **입주자격 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 공급기관의 사정, 천재지변, 주택의 하자 등 **신청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 또는 입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공제 후 잔액 반환
- **예치금 납부 후** 입주자격 최종 확인 과정에서 허위·위조서류 제출, 중요사항의 고의적 누락 등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부적격 처리된 경우**
- **예치금 납부 후** 신청자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공제금액 : 예치금의 10%(100,000원)

③ **공제금액**은 계약포기 또는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리 및 재선정 등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민법**」 **제398조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한 금액**이며,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을 신청자에게 통지한 후 잔액을 반환합니다.

④ **예치금 반환**은 **계약포기, 부적격 확정, 미입주 등 반환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 **[기타사항]**

- 전남개발공사에서 제공하는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을 전남개발공사로 서면통보(담당부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전남개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 이전에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등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입주예정 시기는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및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월 및 실제 입주가능일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 월을,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하며, 관련 내용은 전남개발공사 누리집에도 게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45일 이상으로 설정하며, 구체적인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자에게 별도로 안내합니다. 다만, 사용승인, 공사 진행 상황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된 일정을 지체 없이 안내합니다.

  ※ 관련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설정) 제1, 2항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간주**합니다.

- **해당 단지는 소규모단지(60세대)인 관계로 인근 타 단지에 비해 관리비가 높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 본인 확인 후 세대 열쇠를 교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월 임대료와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월 임대료 및 관리비는 각각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임대차계약서 및 관리기준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월 1만원의 임대료 감면기간 중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실제 부과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연체료를 산정**합니다.
-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2개월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확인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 임대료 부과분부터 월 1만원 감면을 중단하고 **감면 전 표준임대료를 적용**합니다. 감면중단 전에 이미 부과된 임대료는 표준임대료로 소급하여 변경하지 않습니다.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월 임대료를 **5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

  ③ **갱신계약 심사 시점에도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체납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 하나의 연속된 체납기간은 1회로 산정하며, 장기간 계속된 체납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 관리비 체납은 월 1만원 임대료의 감면중단 기준으로 적용하되,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에 따른 재계약 거절 기준과는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임대료 미납 관련 예시>

시점	상황	부과되는 임대료	연체료 기준	처리
1월	정상 감면 적용	10,000원	-	정상
1월31일	1월분 미납	**10,000원**	10,000원에 대한 연체료	아직 감면 유지
2월	1월분 미납 상태	**2월분 10,000원**	1월 체납 10,000원 연체료 계속	아직 2개월분 체납 전
2월28일	2월분도 미납	1월 10,000원 + 2월 10,000원 체납	각각 실제 부과된 10,000원 기준	**2개월분 체납**
3월	감면중단	**표준임대료**	3월분 미납 시 표준임대료 기준	**표준임대료 적용**
3월 31일에도 미납	1·2·3월 임대료 연속 미납	1·2월은 각각 10,000원, 3월은 **표준임대료**	각 월 실제 부과액 기준	**3개월 연속 월 임대료 연체 → 법정 조치 검토**

- 계약체결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자동이체 신청방법과 납부계좌 등 세부사항**은 계약 체결 시 전남개발공사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안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 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는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법적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4 및 제57조의3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설치, 대출 등)는 전남개발공사와 무관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10. 지구 및 단지여건 등

일반사항

- **입주예정 시기는 2027년 3월**이며, 건축공정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이삿짐 일부라도 반입할 수 없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승강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구조·규모·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와 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 시설의 유무 등은 반드시 사업부지를 방문하여 확인 후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 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임대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 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

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승강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구여건

- 해당 사업은 전라남도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제2025-102호, 2025.03.27.) "전남형 만원주택(진도)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시행 중인 사업으로 인·허가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 주택건설 사업계획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단지 내외 유해시설 및 냄새유발시설, 혐오시설의 위치는 계약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신호등, 교차로, CCTV 등)에 대하여 시설물 위치 이전 및 추가설치 등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로의 LPG가스 공급 계획은 단지 외부 기존 저압관에서 분기하여 공급될 예정입니다. 단, 해당 정압시설의 설치를 위한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LPG가스 사용자와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 부대복리시설에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가동 시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열기·먼지·미관저해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DA 천장 설치 위치에 따라 세대별로 소음 및 분진 등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해지, 하자 보수 등 민원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위치를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DA 위치 등은 사업진행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설치위치 : 101동 지하]
- 단지 내 지하 및 PIT층에는 기계실, 펌프실, 저수조, 팬룸, 환기팬, 집수정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단지 외부여건

- 가로등, 공원,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력,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는 한전 전력기기, 가로등, 교통신호등 등 노상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동 표기 계획에 따라 본 아파트의 동 번호 표기 및 순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층별·향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면한 인접대지(도로, 공원 등) 레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경계부의 일부구간에 설치되는 경계펜스스의 노출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레벨차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세대 거실창 방향과 직각으로 배치되는 건물(백두아파트)의 거실창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부여건

- 101동, 102동 1층 세대는 G층에서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실을 통해 세대 출입이 가능합니다.
- 관리사무소(1층), 헬스장(2층), 코인세탁실(3층)은 주민공동시설동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다목적실(지하1층)은 101동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을 통해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하층 층고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보/차도(비상차량 진입도로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조명, 소음 및 매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단지 내 보행자로 인한 저층세대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차위치 및 방향은 단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상황에 따라 장애인 주차장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동은 일부 보행자 동선과 중첩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놀이터에 인접한 주동은 소음 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조경 식재(수종 및 배식) 및 시설물(어린이놀이터 등)과 관련된 사항은 홍보물 상의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디자인(재질 및 색상 등)과 범위, 옹벽 및 단지 경계부위 펜스의 디자인(재질 및 색상 등)과 설치구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 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는 나무 등의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게릴라성 집중 폭우(천재지변)로 인하여 주변 맨홀 등 막힘 발생으로 우수유입에 따른 지하층 피해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 및 단지명, 동명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

의 디자인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일부 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물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문양은 현장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의 구조물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동 통로 공간 및 지하부분 계단실은 기후여건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못 자국, 천공, 벽체·타일 등의 훼손이 확인된 경우 원상복구 비용을 정산할 수 있으며, 미복구 비용은 예치금에서 정산하고 잔액을 반환합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치는 지상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8항 제9항 및 제16조)
- 각 동에 설치된 승강기 운행 및 승강기 기계실 기기작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세대수, 속도 및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 호수별 입주에 따른 보안등 조도 차이로 인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이 설치됨에 따라 자동차의 소음 및 매연공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조등 불빛에 의해 빛공해 및 인근 동 저층 복도 센서등 조명기구가 작동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으로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 생활자원보관소는 일부 동 주변에 설치되어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고, 주변으로 악취·해충·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시공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의 조경 구조물과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은 지역 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 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지하층 승강기홀에 설치되는 배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각 동 현관 앞 공용부위 및 E/V전실 제연구역으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 또는 환기를 위한 자동개폐장치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여 설치되고, 설치위치와 개소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동별 다른 여건으로 인하여 엘리베이터홀 창호 크기 및 자동개폐장치 설치 위치·개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단실 내 고정창 설치로 인해 환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 및 PIT층, 부대시설 내외에 설치됩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위치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이동통신구내 중계설비의 중계장치는 101동 PIT층, 안테나는 주민공동시설동 외부에 설치합니다.
- 주차대수는 총 62대로 지상 48대(장애인 3대 포함), 단지 외 부설주차장 14대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주차(4대)공간은 단지 외 부설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각 동별 이동 동선 및 개소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VR영상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등록디자인 등 지식재산권과의 관계로 기존 제품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자재의 품절·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발코니, 욕실, E/V홀 등의 바닥 단차 부위는 시공 과정상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재문, 가구 및 아트월 등의 인테리어시트는 자재특성 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가전 종류에 따라 일부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일체)은 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및 입주 전 설치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 불가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설치 예정이며, 위치 및 조명기구 변경은 불가합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 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건물외부, 주현관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 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 마감이 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의 인테리어 임의시공에 따른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원인규명의 의무는 입주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레인지 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타입은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자동식소화기는 LPG가스용으로 시공되며, 개별 인덕션 사용 시 해당 열원에 알맞은 자동식소화기를 입주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퇴거 시 LPG가스용 자동식소화기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입주자의 설치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비용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온수분배기,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가스)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입니다.

- 냉장고, 정수기 및 로봇청소기 등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은 가전제품을 위한 급·배수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에는 입주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에어컨, 보일러 및 붙박이장 등이 기본 설치되어 제공**됩니다.
- 입주자는 제공된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품의 교체 및 그에 따른 비용은 입주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퇴거 시 제공된 시설물은 입주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 및 노후는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하며, 입주자의 고의·과실 또는 임의 변경·훼손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이 세대 내부에 설치되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 루버는 수동으로 조작해야 합니다.
- 세대 내 실내 환기는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강제배기)을 적용하며, 실외기실에 환기유닛 및 플렉시블 덕트가 노출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선홈통,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는 화재 시 아래 세대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됩니다.
-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아래 공동주택성능등급은 예비인증 내용으로, 본 인증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가) 소음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4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4
3.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3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2
5. 화장실 급배수소음	3

나) 구조관련등급

성능범주	성능등급
1. 내구성	미대상
2. 가변성	미대상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미대상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미대상

다)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성능등급
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1
3. 토공사 절토·성토량(땅깎기·흙쌓기량)최소화	1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성능	1
6. 에너지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4
7. 신.재생에너지 이용	3
8.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적용	3
9.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 물질의 사용금지	4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4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4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4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4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 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4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3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3

다)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4
22. 생태면적률	4
23. 생물서식공간(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4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4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3

라) 생활환경등급

성능범주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2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3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4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2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1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1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1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미대상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미대상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미대상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미대상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미대상
14. 방범안전 콘텐츠	미대상
15. 주차공간 추가확보	미대상

마) 화재소방등급

성능범주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미대상
2. 제연설비	미대상
3. 내화성능	미대상
4. 수평피난거리	미대상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미대상
6. 피난설비	미대상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미적용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절수설비	적용
지붕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12.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사업명	사업주체	시공업체	감리회사
전남형 만원주택(진도)	전남개발공사 ㈜유승종합건설	㈜유승종합건설 ㈜세경 대신네트웍스(주) ㈜일도엔지니어링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탑건축사사무소 ㈜예림씨엠건축사사무소 ㈜부성씨엠

13. 갱신 임대조건

기본원칙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거주기간)을 모두 갖춘 임차인에 대한 갱신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시점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차인 세대의 월평균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소득구간계수(0.35~0.9)를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조건**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5% 이내의 인상률 범위에서 변경 적용됩니다. **다만, 동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소득 초과자는 제외하며, 자세한 사항은 「임대조건의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갱신계약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조건 산정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갱신 임대조건 산정 방법

  - **갱신계약 시점의 임대시세로 산정**하되, **종전계약 시 적용한 임대시세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결정하는 임대조건 인상률 범위 내(최대 5% 이내)로 결정**



  - 시장전환율은 **실제 해당지역에서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말하며, 갱신시점의 소득구간계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갱신시점의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구간계수**를 의미
  - (예시) 시중시세 5% 이상 지속 증가 + 입주자 소득변동으로 소득구간 계수가 변경(2→3→1구간)되는 경우

[단위 : 원]

구분	시중 전세시세	소득구간계수	임대조건 (시장전환율 4% 가정)			산출내역
			임대보증금	예치금	월임대료	
최초계약	100,000,000	(1구간) 35%	-	1,000,000	116,667	**[임대료]** 100,000천원 × 0.40 × 100% × 4% ÷ 12
		(2구간) 40%	**-**	**1,000,000**	**133,333**	
		(3구간) 50%	-	1,000,000	166,667	
		(4구간) 65%	-	1,000,000	216,667	
		(5구간) 80%	-	1,000,000	266,667	
		(6구간) 90%	-	1,000,000	300,000	
1차 갱신계약	105,000,000	(1구간) 35%	-	1,000,000	122,500	(갱신시점) 임대시세 = MIN [100,000천원×1.05 = 105,000천원] **[임대료]** 105,000천원 × 0.50 × 100% × 4% ÷ 12
		(2구간) 40%	-	1,000,000	140,000	
		(3구간) 50%	**-**	**1,000,000**	**175,000**	
		(4구간) 65%	-	1,000,000	227,500	
		(5구간) 80%	-	1,000,000	280,000	
		(6구간) 90%	-	1,000,000	315,000	
2차 갱신계약	110,250,000	**(1구간) 35%**	**-**	**1,000,000**	**128,625**	(갱신시점) 임대시세 = MIN [105,000천원×1.05 = 110,250천원] **[임대료]** 110,250천원 × 0.35 × 100% × 4% ÷ 12
		(2구간) 40%	-	1,000,000	147,000	
		(3구간) 50%	-	1,000,000	183,750	
		(4구간) 65%	-	1,000,000	237,875	
		(5구간) 80%	-	1,000,000	294,000	
		(6구간) 90%	-	1,000,000	330,750	

- 구간별 **소득 및 감면 요건 미충족자**는 갱신 임대조건에 할증이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임대조건의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의 할증 【근거: 건축개발과-1884(2026.07.30.)호】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하였으나,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 초과 및 감면 요건 미충족 임차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할증된 임대조건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갱신계약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조건 할증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감면요건 미충족

- 임대차 기간 중 이 공고에서 정한 임대료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최초(1차) 갱신계약 시 감면 전 표준임대료의 150%로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며, 이후 2회차 갱신계약부터 재계약 거절 및 퇴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 관계 법령상 재계약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3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퇴거의무 발생 후에도 주택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표준임대료의 150% 적용을 포함하여 손해배상 예정액(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 임대차계약 특약)을 주택 인도일까지 매월 부과합니다.

※ 150% 적용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4340(2025. 12. 31.) 호로 승인받은 진도 청년드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임대조건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며, 계약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은「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3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진도 청년드림 만원주택은 주거지원 혜택이 큰 특화 공공임대주택으로 관계 법령 및 국토교통부 승인 내용에 따라 입주·갱신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및 감면요건 미충족 시에는 관계 법령 및 승인된 임대조건에 따라 표준임대료의 150%가 적용될 수 있으며,「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3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이 가능합니다.

■ 할증조건 예외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를 초과하더라도 입주자격 구분별 소득구간 상한까지는 소득기준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주자격 구분	신청자격	임대조건
(예비)신혼부부	① 가구원 수가 3명 이상이고 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80% 이하인 자** ② 가구원 수가 2명이면서 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90% 이하인 자** (*) 소득 :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만 해당	6구간 적용
(예비)신혼부부 外	① 가구원 수가 1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70% 이하인 자** ② 가구원 수가 2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60% 이하인 자**	

※ 위 예외범위를 초과하여 관계 법령상 재계약 거절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 · 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대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명예수당,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